

2007. 9.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③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④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⑤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 ⑥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⑦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總務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9.05	2007.09.05	2007.09.14	2007.09.14	총무과장
[2]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	"	"	"
[3]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기획행정국장
[4]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자치정보과장
[5]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	"	"	"	사회복지과장
[6] 충주시충렬사관람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7] 충주시사적지주차장 설치및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구 증가지역
(교현·안림동, 연수동) 3개통 27개반 증설

- 교현·안림동 충주 엘리시아 아파트(397세대) 1개동 11개반
- 연수동 연수주공6단지 아파트(538세대) 2개동 16개반

나.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 제안이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안 제3조)
- 나. 중장기 종합계획,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행정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안 제5조)
- 다. 비공개 대상(안 제6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함. (안 제10조)
- 마. 청구인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안 제11조)
- 바.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13조)

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 위촉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 제1호)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

나. 위원회의 관할 대상 축소(안 제3조 제2항)

- 충주시 소속 공무원 및 퇴직자, 의회의원

⇒ 충주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퇴직자

다. 위원회의 심사활동사항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
(안 제6조의 2)

라.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제2조)

- (1) 타 시 · 군 · 구에서 전입하는 전입인, 충주사랑 홍보원으로 선정된 사람
- (2) 10인 이상의 직원을 관내로 전입시킨 사업체 및 기관

나. 홍보원 자격 및 역할(제3조)

- (1) 홍보원은 만18세 이상 전입자를 대상으로 선정
- (2)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외지인 전입 홍보 등
- (3) 홍보원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인 시 홈페이지에 공고

다. 지원규모 및 시기(제4조)

(1) 전입인 : 쓰레기봉투(20ℓ) 1인당 10매,
전입신고 시 읍면동장이 지급

(2) 홍보원 : 장려금 1인당 20만원이하,
다음해 1월 개별통장으로 지급

(3) 사업체 및 기관

- 장려금
 - 전입인 10인 : 50만원
 - 전입인 10인 초과 시 :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
- 지원시기 : 다음해 1월에 지급

마.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15인 이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읍면동별 10인 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 기금조성 : 시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
 - 기금의 사용 : 학자금, 직업훈련 지원금, 1인 300만원 이내의 자립정착 지원금으로 사용

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충렬사를 방문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역사의 체험장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

사.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충렬사 관람료 폐지와 병행하여 충렬사의 주차장 사용료도 폐지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재 관람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중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과 같이 통을 신설할 경우

1개통별로 250~400세대에 이르는
많은 세대를 관리하게 되어 부담스러운 점도 있으나

행정전산화로 통장의 업무가 많이 줄었고
아파트라는 특수성도 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중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
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다.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3조의 “충주사랑 홍보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우리 시 만의 특수시책으로 독창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역할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많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역할을 시행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할 때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의 홍보원 및 집단전입 장려금 지급은 일정기간동안을 거주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조례안에 인구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절차가 까다롭고 큰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를 들어

전입자에 대한 시세의 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융자지원, 직업훈련비의 지원 등 전입욕구를 불러일으킬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정책위에 소득원이 되는 기업 및 관광 등의 활성화가 융합되어야 비로소 인구늘리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그 외에도 전출억제와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등도 본 조례안에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과 현행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돼 오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관한 사항을 병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본 폐지조례안은

충렬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입장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집행부의 결정대로 입장료를 폐지하여 관람객의 부담을 덜어 이용률을 높이고 교육적 활용가치를 높여 임경업장군의 업적을 보다 잘 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 본 폐지조례안은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의 폐지와 병행하여 충렬사의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적 활용가치를 높여

임경업장군의 업적을 보다 잘 알릴 수 있도록

주차장 사용료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장기적으로 통반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답변 :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나.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질의 : 공개대상 정보의 공표방법은?

○답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표하겠음.

다. 충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라.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 전입인에 지급하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답변 : 연 1만 7천명이 전입,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

▶질의 : 익년 1월에 곧바로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답변 : 교부세 산정기준일이 연말이기 때문에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마.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 ▶ 질의 :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 답변 : 지도협의회에서 지도위원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됨.

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 질의 :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가?
○ 답변 : 현재 2인이 운영 중, 1인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운영비 절감은 어려울 것임.

사.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 ▶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 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제3조 제1항에 단서 신설 : “이 경우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마.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안 : 수정가결
 (제20조 조 제목을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지도위원회’로 수정)
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사.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 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
- 다. 충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수정안 1부.
- 마.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수정안 1부.
- 바. 충주시충렬사관람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사.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